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아 시 아 · 태 평 양 무 역 협 정 원 산 지 확 인
기 준 등 에 관 한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홍남기 (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전

1. 의결주문

아시아·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통과선하증권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 서류를 통해서도 직접 운송원칙을 증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화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

2) 입법예고(2020. 2. 13. ~ 2. 27.)

아시아·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기준 확인 등에 관한 규칙

아시아·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서류를 모두”를 “서류 중 하나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항 제4호를 제2호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수입 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.

현행	개정안
제8조(직접운송의 원칙) ①·② (생략) ③ 제2항을 적용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<u>서류를 모두</u> 제출하여야 한다. 1. (생략) 2. <u>수출참가국의 발행 당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</u> 3. <u>해당 물품과 관련된 상업 송 품장 원본</u> 4. (생략)	제8조(직접운송의 원칙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 <u>서류 중 하나를</u> ----- -. 1.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 <u><삭 제></u> 2. (현행 제4호와 같음)